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7호(號) 1935(昭和 10)년 2월 28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07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8호(號)(내선만대여객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旅客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5(昭和 10)년 3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2월 2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 중(中) 제14호(號)를 제15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, 제13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14 북구주상선(北九州商船)이란 북구주상선주식회사(北九州商船株式會社))를 말함.

제27조(條)제4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4의2 동(同) (북구주상선항로경유[北九州商船航路經由])